

2021년도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 나급 채용시험 변경계획 공고

인천광역시 서구 지방시간선택임기제 나급(수소 및 친환경에너지 활성화 업무) 공무원 채용시험 시행 변경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
참신하고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바랍니다.

2021. 7. 9.

인천광역시서구인사위원회 위원장



1.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

채용예정 분 야	채용인원	채용직급	채용기간	담 당 업 무
수소 및 친환경에너지 활성화 업무	1명	시간선택 임기제 “나”급	임용일로부터 1년 (주 35시간)	○ 「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 률」에 대한 업무 처리 ○ 수소 및 친환경에너지 활성화 사업 전반에 대한 기획, 조정 및 업무 처리 ○ 사업 추진을 위한 각종 조사, 의견 수렴 및 기 타 관련 업무 수행

- ※ 1. 채용기간은 근무실적 평가에 따라 연장 가능(근무실적평가에 따라 총 근무기간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)
2. 채용근무기간 만료일 이전에도 「지방공무원법」 제62조에 의거 임용약정 해지 가능
3. 임용포기, 합격취소, 임용결격사유,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임용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한 경우,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 면접시험에서의 평정 성적이 차하위자 순으로 선발

2. 근거법령

- 「지방공무원법」 제25조의5(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)
- 「지방공무원임용령」 제3조의 2(임기제공무원의 종류)
- 「지방공무원임용령」 제21조3(임기제 공무원의 임용절차 등)

3. 응시자격 기준

가. 공통사항 (아래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자)

- 「지방공무원법」 제31조(결격사유), 「지방공무원임용령」 제65조(부정 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)에 해당하지 않고,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(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)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(면접시험일 기준)

▶ 「지방공무원법」 제31조(결격사유)
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.

1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3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
- 6의2.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6의3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▶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(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)

-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
 1.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, 파면 또는 해임된 자
 2.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선고를 받은 자
-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, 파면,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,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(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.
 1. 공공기관
 2. 대통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

- 3.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(다음 각 목의 법인 등을 포함한다)
- 4.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·단체(이하 "협회"라 한다)
- ③ 제2항에 따른 취업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「상법」에 따른 사외이사나 고문 또는 자문위원 등 직위나 직책 여부 또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취업제한기관의 업무를 처리하거나 조언·자문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주기적으로 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대가로서 임금·봉급 등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취업한 것으로 본다.
- ④ 「공직자윤리법」 제17조제2항, 제3항, 제5항 및 제8항은 제2항제3호에 따른 퇴직 전 소속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영리사기업체 등 사이의 밀접한 관련성의 범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.

- 거주지 및 성별 제한 없음
- 20세 이상인 자
-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자

나. 채용분야 자격요건

- 자격요건

채용분야	변경 前 자격 요건	변경 後 자격 요건
수소 및 환경에너지 활성화 업무	<p>수소 및 친환경에너지 활성화 업무 수행이 가능한 자,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임용예정 직문분야(가스 혹은 화공)와 관련된 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</p> <p>1) 화학분야(화학, 화학공학, 신소재공학 등)를 전공한 자로서 관련분야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</p> <p>2) 5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</p> <p>3) 7급 또는 7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</p> <p>※ 관련분야: 수소 산업 관련 근무 경력 (수소 및 친환경에너지 관련)</p>	<p>수소 및 친환경에너지 활성화 업무 수행이 가능한 자,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임용예정 *직무분야와 관련된 기사 자격 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</p> <p>1) 화학분야(화학, 화학공학, 신소재공학 등)를 전공한 자로서 관련분야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</p> <p>2) 5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</p> <p>3) 7급 또는 7급 상당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</p> <p>*직무분야와 관련된 자격증</p>

	<p>※ 관련분야 경력은 제출한 경력(재직)증명서로 담당업무 등이 명확히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</p> <p>※ 우대사항: 국가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, 민간법인, 민간단체 등에서 국책과제 수행 경험자</p>	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구 분</th> <th>자격증 종류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기술사</td> <td>화공, 화공안전, 가스</td> </tr> <tr> <td>기능장</td> <td>가스</td> </tr> <tr> <td>기사</td> <td>화공, 산업안전, 가스, 화학분석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구 분	자격증 종류	기술사	화공, 화공안전, 가스	기능장	가스	기사	화공, 산업안전, 가스, 화학분석
		구 분	자격증 종류							
		기술사	화공, 화공안전, 가스							
		기능장	가스							
기사	화공, 산업안전, 가스, 화학분석									
<p>※ 관련분야: 수소 또는 에너지 산업 등 관련 근무 경력</p>										
<p>※ 관련분야 경력은 제출한 경력(재직)증명서로 담당업무 등이 명확히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</p>										
<p>※ 우대사항: 국가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, 민간법인, 민간단체 등에서 국책과제 수행 경험자</p>										

4. 선발방법(서류전형 → 면접시험)

가. 1차 시험 : 서류전형

- 채용예정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경력(자격기준 요건 등)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채용자격 요건에 적합한 경우 합격

나. 2차 시험 : 면접시험

-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, 자질 및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

다. 기타사항

- 응시자가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 인원보다 적을 경우 10일간 재공고함.
- 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응시인원이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

없는 경우 포함

※ 1차 공고 시기 접수한 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재공고 응시
원서 접수자로 같음함.

○ 동점자 처리

- 선발예정 인원을 초과한 동점자 :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계산한 점수
-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동 순위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을
다시 실시하여 최종합격자를 결정

5. 시험일정

모집공고	원서접수	서류전형 합격자 발표	면접시험	최종합격자발표
2021. 7. 9.(금) ~ 7. 19.(월)	2021. 7. 15.(목) ~ 7. 19.(월)	2021. 7. 27.(화)	2021. 8월중	2021.8월중

※ 서류전형 합격자, 면접일정 및 최종합격자 발표는 인천광역시 서구 홈페이지 채용소식란에 게시 예정

※ 위 일정은 접수 인원, 우리 구 사정 및 코로나19 등으로 인하여 변동 될 수 있으며 변경
시에는 개별 문자로 안내 예정

6.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

가. 원서교부 : 서구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사용

나. 접수기간 : 2021. 7. 15.(목) ~ 2021. 7. 19.(월)

다.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처

채용분야	원서 교부 및 접수
수소 및 친환경에너지 활성화 업무	서구청 (서구 서곶로 307) 2층 총무과 인사팀 방문접수(인천 서구청 총무과 인사팀)또는 등기 우편 접수

※ 우편 접수 시

- 주소: (22726)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(심곡동) 인천서구청 총무과 인사팀

- 접수마감일 우편 소인분까지 유효한 접수분으로 인정
- 우체국 통상환증서(7,000원) 동봉
- 응시표 이메일 송부 예정 ☞ 응시원서 이메일 주소 기재
- 응시표는 면접시험 참석 시 출력하여 지참
- 우편 접수 시 인사담당자(☎032-560-4104)를 통해 접수확인을 위한 전화 요망

라.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: 2021. 7. 27.(화)

- 구 홈페이지 채용소식란 게재

마. 면접일정, 최종합격자 결정 : 추후공고

7. 보수 및 복무조건

가. 보수

- 연봉 : 『지방공무원보수규정』 및 『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』에 따라 지급

구 분	연봉액	비 고
지방시간선택 임기제공무원 '나'급 (6급 상당)	44,710천원	51,098,000원 × 35/40시간 × 1년 × 1명

- 연봉외 급여(수당) : 『지방공무원보수규정』 및 『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』에 따라 지급

나. 복무조건

구 분	지방시간선택임기제공무원 '나'급 (6급 상당)
근무기간	임용약정일로부터 1년
소 속	인천광역시 서구 기후에너지정책과
근무시간	주 35시간
복무기준	「지방공무원복무규정」 및 「인천광역시 서구 공무원복무조례」 준용하되, 근무시간 등 근무조건(토·일·공휴일, 야간 근무 등)은 부서 여건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
약정해지	업무태만, 근무수행능력 부족, 임용 결격사유 발생시

※ 채용기간은 근무실적 평가에 따라 연장 가능(사업 종료 시까지)

8. 응시원서 접수 및 제출서류

가. 응시원서 1부 <서식1>

- ※ 응시수수료 : 7,000원(나급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)
 - 방문접수: 인천 서구 수입증지 날인(서구청 1층 민원봉사과)
 - 등기우편 접수: 우체국 통상환증서 동봉

나. 이력서 1부. <서식2>

- 이력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

다.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각 1부. <서식3,서식4>

- ※ A4용지 각 3매 내외, 경력 중심으로 작성

라. 서류전형 제출서류 양식 1부.<서식5>

마. 임용예정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. (해당자에 한함)

- ※ 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발행분
- ※ 경력증명서는 유효기간 내의 원본 제출만 인정
- ※ 근무기간, 직위,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(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)하고, 민간 근무경력의 경우 사업체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법인등기부등본, 건강보험자격 득실 확인서(국민건강보험공단 「<http://www.nhic.or.kr>」 발급) 등 자료 첨부
- ※ 서류전형 시 경력증명서에 기재된 담당업무가 당해분야인지를 판단하게 되며, 판단이 모호할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됨으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부서에서 당해분야 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
- ※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,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,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(국민건강보험공단 「<http://www.nhic.or.kr>」), 법인등기부등본 등 확인 가능 자료 추가 제출
- ※ 외국어로 된 서류는 반드시 번역문(공증 필) 첨부

※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직 근무경력 인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음

☞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(행정자치부 예규 제98호, 2019. 12.26.)

1. 전임 근무의 경우에는 경력의 전부를 인정
 - 종전 계약직 및 임기제공무원 등으로 3년간 전임 근무 : 3년 인정
2. 시간선택제 근무의 경우에는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의 일부를 인정
 - 종전 계약직 및 임기제공무원 등으로 4년간 주 20시간 시간제 근무 : 2년 인정
3. 프리랜서, 자원봉사, 시민단체 활동 등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할 경우에는 5인 이상으로 구성된 심의회(당해 직무분야의 외부 전문가를 1/2 이상 포함)에서 경력 인정범위를 인정
 - 외부 전문가 위촉 시에는 응시자와 출신학교, 근무경험 등의 관계가 없는 자로 구성

바.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1부.

※ 대학교(전문학사) 이상은 대학교 이상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

사. 자격(면허)증 사본 1부.(추후 원본 확인 예정)

- 해당분야 자격증 제출
- 기타 직무분야에 필요한 국가기술자격증(전산관련 자격증 등) 제출(해당자에 한함)

아.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1부 <서식6>

자. 행정정보공동이용사전동의서 1부 <서식7>

차. 자격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.<서식8>

카. 고용보험 임의가입제도 안내 및 가입의사 확인서<서식9>

9. 기타사항

- 응시자는 채용자격기준 등에 적합한지를 신중히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라며 제출된 서류에 자격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, 제출서류,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나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(각종 증명서)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180일까지 반환이 가능합니다.
-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,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,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회, 채용신체검사 및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.
-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.
- 제출서류(이력서, 자기소개서,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)는 게시된 소정의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.
- 최종 합격자가 임용포기, 합격 취소 등의 사유로 임용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한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로 합격기준에 적합한 사람 중 차순위자를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.
- 상기 시험일정 등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,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 - 채용절차 관련 문의 : 총무과 인사팀(☎ 032-560-4104)
 - 담당직무 관련 문의 : 기후에너지정책과 친환경에너지팀(☎032-560-3312)